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 · 문의 · 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제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¹

**고농도 TDS 및 염분을 함유한
폐수처리는?**

고농도 TDS(7,000~2,500mg/L)에 의하여 미생물 성장이 안돼서 미생물 농도유지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탄올과 암모니아등 영양물질도 계속 주입해주는데 MLVSS 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희석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희석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희석처리에 관한 규정이 나온 법규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희석처리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Q²

올바로 인계서 출력, 보관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자입니다.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배출자인 계서와 운반자인계서를 출력하고 운반자가 폐기물을 운반할 때 출력한 운반자 인계서를 출력해서 주었습니다. 출력한 배출자인계서는 보관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올바로

에 입력하면 배출자용이든 운반자용이든 출력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다던데 맞는지요?

A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0조제2항〔별표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인계 · 인수 시에는 배출자가 운반자에게 인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되고, 출력물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Q³

음식물 처리기 불법제품과 합법제품의 구별방법은?

예전에 초기에 디스포저(음식물분쇄기)들은 그저 갈아서 물과 함께 씻어서 내려보내기만 했지만 법령이 정해지면서 이런 제품은 판매를 할수 없게 되자 2차 감량기라는 것을 설치하여 재분해 방식으로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차 감량기라는 재분해장치가 달리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불투명하게 된거 같습니다. 즉 음식물 쓰레기 량이 총 1Kg이고 이 쓰레기량이 1차 디스포저에서 분쇄되고 흘러내려가 2차 감량기라는 곳에서 미생물 분해 또는 건조분말처리되어 200g이내의 량으로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이 남은 찌꺼기 잔량은 하수관으로 모두 배출해도 합법적인 건가요? 이렇게되면 실제 쓰레기는 100%를 다 버린거에 해당하지만 실제 하수관에 흘린양은 20%가 되는건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이 안됩니다. 최근에 이런 제품들이 인증을 받

았다고 과열 선전중이고 이런 제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A

합법적인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시키고,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조작할 수 없다고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분쇄 배출하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달리 구조변경하여 20%이상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는 불법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인증받은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100%분쇄 배출 등)을 판매하면서 인증 받았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⁴

수질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을 시행령 별표17에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2종사업장이며 이경우 별표17. 비고 3. 평균 1시간 이상작업하는 경우 환경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당사업장은 관리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중인데 이경우 환경기술인 2명을 당사업장에서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대행계약서로 대신할 수있는지요?

A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위탁한 경우 환경기술인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Q⁵

총량사업장에 자동측정기기 부착 여부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이며 대기(2종)사업장입니다. 대기 총량사업장으로 허가를 득하여 기존에 소각시설(190kg/hr x 1set)을 설치 운영중이며 운영중인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800kg/hr x 1set)로 설치하여 운영 하려 합니다. 이에 총량사업장변경허가를 신청하려 합니다. 총량사업장 변경 허가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4톤을 초과하지 않으면 총량사업장허가를 반납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별표2항에 자동측정기기 부착여부중 고형연료제품사용 시설(200kg/hr x 1set)에 해당되어 자동측정기기(질소산화물)을 설치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형연료제품사용 시설(800kg/hr x 1set)로 운영시 대기배출시설1종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4톤 미만으로 배출됩니다

A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이 배출시설 변경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총량관리사업장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량 대상사업장)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2] 규정에 따라 시간당 200kg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총량 비대상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규정에 따라 시간당 1톤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